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경숙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0518 발의연월일: 2025. 5. 14.

발 의 자: 강경숙·정혜경·김재원

이병진 · 김문수 · 황운하

서왕진 · 신장식 · 용혜인

윤종오 • 전종덕 • 차규근

정춘생 • 한창민 • 이해민

백승아 의원(16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 「대한민국헌법」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및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로써 보장됨을 명시하고 있음. 이에 따라 「국가공무원법」에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교육기본법」에도 교육의 중립성과 교원의 정치적 중립의무가명시되어 있음.

한편, 국민이라면 누구나 표현의 자유를 누리고 있지만 교원은 정당가입은 물론이고, 후원금조차 낼 수 없는 것이 현실임. 어떠한 정치적기본권도 행사할 수 없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음. 대한민국은 OECD 38개국 중 교사의 학교 밖 정치기본권을 제한하는 유일한 나라이며,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 국제노동기구(ILO) 역시교원의 정치적 활동이 과도하게 제한적이라고 지적해왔음.

이에, 국·공립학교 교원 및 사립학교 교원은 정당에 가입할 수 있 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1항제1호 단서, 같은 항 제2호 삭제).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백승아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 안」(의안번호 제180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 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 어야 할 것임. 법률 제 호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1호 단서 중 "「고등교육법」 제14조(교직원의 구분)제1항·제2항에 따른 교원"을 "「교육공무원법」에 따른 교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
① 16세 이상의 국민은 공무원	①
그 밖에 그 신분을 이유로 정	
당가입이나 정치활동을 금지하	
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	
고 누구든지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	1
무원의 구분) 또는 「지방공	
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	
분)에 규정된 공무원. 다만,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선거	
에 의하여 취임하는 지방자치	
단체의 장, 국회 부의장의 수	
석비서관 • 비서관 • 비서 • 행	
정보조요원, 국회 상임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윤리	
특별위원회 위원장의 행정보	
조요원, 국회의원의 보좌관・	
비서관·비서, 국회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행정비서관, 국회 교섭단체의 정책연구위원·행 정보조요원과 <u>「고등교육법」</u> 제14조(교직원의 구분)제1항 · 제2항에 따른 교원은 제외한다.

- 2. 「고등교육법」 제14조제1항

 ·제2항에 따른 교원을 제외

 한 사립학교의 교원
- 3. 4. (생략)
- ② (생략)

「교육공무원
법」에 따른 교원
<삭_제>

3. • 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